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20221267
최초 등록일	2022.11.25
최종 등록일	2024.12.20

키크고잉 자전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 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상 호	주식회사 피유엠피	서비스 명	키크고잉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길 31, 6층 606호,607호,608호		
전화번호	1800-7492	홈페이지	Kickgoing.io
담당부서	위탁운영본부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피유엠피	킵고잉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1길 31, 6층 606호,607호,608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 12. 28.	2019. 03. 01.	김동현	02-568-3340	02-554-0199
	법인등록번호	110111-6969393	사업자등록번호	658-87-0123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2024년 9월 주식회사 피유엠피가 주식회사 올룰로를 흡수 합병 하였음.

4. 가맹희망자가 경영할 가맹사업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칭	킵고잉(KICKGOING)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상호	킵고잉(KICKGOING) OO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0-2018-0086417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1)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연 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2021년	7,454	2,143	5,311	11,272	3,509	3,791
2022년	12,688	7,035	5,653	13,292	3,577	3,658
2023년	6,895	6,540	355	14,179	5,310	5,301

각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첨 1]과 같습니다.

- 아직 합병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아서 주식회사 올룰로(합병전) 재무 전달 합니다.

2)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본 정보공개서 등록일 현재(22년 기준) 가맹사업을 영위하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킵고잉' 영업표지로 전동킵보드 공유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바, 전동킵보드 공유 서비스의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 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성 명	현 직위	사업 경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 원	김동현	대표이사	'24년~현재	(주)피유엠피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19년~'24년	피유엠피 사내이사	사업총괄
			'02년~'17년	웅진	사업총괄

	최영우	사내이사	'24년~현재	(주)피유엠피 사내이사	기술 총책임
			'18년~'24년	(주)올룰로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영호	기타비상무이사	'22년~현재	피유엠피	-

7. 직전 사업연도말 임직원 수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임 원		직 원 (상근)
	상 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명	2명	66명

- 합병 전 정보는 확인이 어려움 (올룰로로 대체)

8.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키크고잉 KICKGOING (상표권)		2018.6.26. 출원 2019.6.14. 등록	출원 제40-2018- 0086417	주식회사 올룰로	2029.6.14.
			등록 제40- 1489358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킥고잉 가맹사업 시작 일

당사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직영점은 2018년 9월에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 킥고잉 가맹사업 연혁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식회사 올툴로	킥고잉	최영우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길 27, 1308호
주식회사 피유엠피	킥고잉	김동현	예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섬로1길31, 6층 606,607,608호

3. 킥고잉 가맹사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대분류	운수및창고업	소분류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	--------	-----	-----------------

4. 최근 3개 사업연도말 영업 중인 킥고잉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지역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	-	1	1	-	1	17	16	1
서울	1	-	1	1	-	1	3	2	1
부산	-	-	-	-	-	-	1	1	-
대구	-	-	-	-	-	-	1	1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지역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경기	-	-	-	-	-	-	7	7	-
강원	-	-	-	-	-	-	1	1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2	2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1	1	-
경북	-	-	-	-	-	-	2	2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킥고잉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계약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	17	-	1	-	16

6. 킥고잉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킥고잉 가맹사업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 현황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3년말 가맹점수	연 평균 매출액		연 평균 매출액 (상한)		연 평균 매출액 (하한)	
		평균	3.3㎡당	평균	3.3㎡당	평균	3.3㎡당
전체	16	41,981	-	-	-	-	-
서울	2	27,350	-	-	-	-	-
부산	1	12,925	-	-	-	-	-
대구	1	1,518	-	-	-	-	-
인천	-	해당없음-	-	-	-	-	-

지역	'23년말 가맹점수	연 평균 매출액		연 평균 매출액 (상한)		연 평균 매출액 (하한)	
		평균	3.3㎡당	평균	3.3㎡당	평균	3.3㎡당
광주	-	해당없음-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경기	7	17,359-	-	-	-	-	-
강원	1	90,114-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충남	2	25,520-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전남	1	13,804-	-	-	-	-	-
경북	2	15,863-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 면적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면적당 매출 산정 어려움.

연 평균 매출액 -> 연 매출 (자료 첨부)

8. 직전 사업연도말 킥고잉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 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6	5.8개월

9. 가맹지역본부 현황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직전 사업연도 광고,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1년에 킥고잉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당사가 가맹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모든 광고비와 판촉비를 기재하였습니다.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 고
			합 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 계	인터넷 등	2023년	54,280	54,280	-	
광 고	인터넷 등	2023년	54,280	54,280	-	
판 측	-	2023년	-	-	-	

11. 예치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치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IBK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담당부서	주 소	전화번호
IBK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IBK기업은행에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회원가입 후, 다음과 같이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를 가입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치 방법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문의전화 (1588-2588)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बैं킹관리 → 제휴서비스 → 가맹금인터넷예치서비스 → 가맹금예치 → 가맹본부 사업자번호 입력 후 가맹본부 상세정보 확인 → 가맹금 예치하기

법인사업자의 경우: बैं킹업무 → 가맹금인터넷예치 → 가맹사업자 → 가맹금예치 → 가맹본부 사업자번호 입력 후 가맹본부 상세정보 확인 → 가맹금 예치하기

귀하는 IBK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증서는 예치완료 화면에서 ‘예치증서보기’를 클릭한 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 본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귀속됩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 예치가맹금의 가맹본부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 나. 예치가맹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③ ②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I.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킥고잉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아래 내역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담해야 하는 점포 임대, 차량 구매(혹은 리스), 집기비품 구비 관련 대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 고
-----	-------	-------	-----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함	확정 금액
자전거 및 필수 부속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주문 수량에 따라 금액 상이

1)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 (천원)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교육비	1,000	계약 체결 즉시	교육 개시 전 계약해지	교육에 소요되는 실비

상기 예치가맹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2) 자전거 및 필수 부속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금액 (천원)	단가 (천원)	최소 주문수량	지급기한	반환 조건
자전거 (잠금장치 및 배터리 포함)	가맹 본부	180,000	1,800	100대 (직경 100m당 3대)	계약금(30%): 계약체결일부터 5영업일 내 잔금(70%): 인수 1일 전	가맹본부 의 협력업체 발주 전 계약취소
추가 배터리		6,000	300	자전거 구매수량의		
충전기		1,500	50	20%, 30%		

구매 수량에 따라 귀하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단가는 당사의 매입 가격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지급기한 및 반환조건은 가맹본부와의 특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	-------

가맹희망자	▪ 가맹희망자의 가맹사업 희망 지역에 대한 시장 조사 ▪ 서비스 기준 (직경 100m당 3대 이상)이 충족되는 최적 서비스 지역 도출 ▪ 가맹본사와 가맹희망자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	--

당사는 당사의 다년간 서비스 경험과 고객 데이터를 토대로 가맹점사업자가 서비스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고려사항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의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하며, 서비스 지역 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지역과 관련된 권리의 하자 등을 이유로 당사에 책임을 지을 수 없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채용 기준	교육 기준
가맹점사업자	▪ 만19세 이상 ▪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 서비스 개시 전 교육 이수 필수
종업원	▪ 만19세 이상	▪ 특별한 기준 없음

5)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장착물 등의 공급 방법 및 공급 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플랫폼 사용료	당사	월 매출액의 30%	월 정산		매출 연동 비용	(*1,2)
부품 구입비	당사	실비	선급	당사 발주 전 취소		(*3)
유상 정비비	당사	부품 : 실비 공임 : 선임 30,000원/h 일반 22,500원/h	월 정산	당사 정비 전 취소		(*2)
운영 지원비	당사	실비	월 정산	운영 지원 취소		(*2)
개점 후 교육비	당사	1,000 / 1인	선급	교육 진행 전 취소		
광고 분담금	당사	협의	별도 공지	광고 미진행		(*4)
판촉 분담금	당사	협의	별도 공지	판촉 미진행		(*4)
지연이자	당사	연 10%	지체기간		계약 불이행	

(*1) 플랫폼 사용료는 브랜드 로열티, 앱 및 서버 운영비, 보험료, 통신료, PG수수료, 고객센터 운영비 등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운영 비용으로 매출에 연동하여 부과됩니다.

(*2) 가맹본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고객의 서비스 이용료를 수취한 후, 익월 15일 전에 플랫폼 사용료, 유상 정비비, 운영 지원비 등을 제외한 정산 차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3) 가맹점 사업자는 당사가 매 분기 고지하는 단가표 ([별첨 4] 참고)에 따라 본인의 판단으로 자전거 정비를 위한 적정 수준의 부품을 구매합니다.

(*4) 광고 및 판촉 분담 세부기준은 27페이지 참조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요한 감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감독시기
배터리 교체 관리	배터리 교체 대상 기기가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지?	월
자전거 정비 관리	- 자전거가 적시에 정비되고 있는지? - 적정한 수준 부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 정비되지 않은 자전거가 운영되고 있는지?	월
점포 관리	점포 내 충전 및 배터리 관련 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분기
회계처리	- 부가세 일반과세자로서 요구되는 회계 관리가 되고 있는지? - 부가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를 적절히 납부하고 있는지?	분기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계약을 종료 전에 연장 (갱신 및 재계약 포함)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될 경우 조치사항

-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의 가맹계약은 양수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하기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의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를 미리 귀하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부담하는 비용

귀하가 운영하는 킥고잉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점운영권 양도와 관련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즉시 가맹점의 운영을 중단하고 5영업일 이내에 당사가 제공한 일체의 자료들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사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 및 비용(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포함함)을 정산하여 익월 15일 이전까지 귀하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이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초과할 경우, 귀하는 그 차액을 당사에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는 귀하가 구입한 자전거, 배터리, 충전기, 수리용 부품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매 수량 및 가격은 당사와 귀하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I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브랜드와 서비스 일관성을 위하여 영업활동 자율성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용역 구입 및 임차

1) 물품·용역 구입 및 임차 내역

가맹점사업자가 Kickgoing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부자재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사업자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용역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 및 경영 환경 변화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특정 거래 요구 및 권장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브랜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해야 하며, 그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잠금해제 (대여와 동시 과금)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용역을 공급할 수 없음	1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주행 (잠금해제 후 반납까지 과금)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만 13세 미만	잠금해제 및 주행	용역을 공급할 수 없음	· 1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 앱 자체적으로 제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용역	세부 내역	권장 가격 (VAT 포함)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잠금해제	자전거 대여와 동시에 과금되는 요금	1,000원 (심야 0~4시 1,500원)	당사 애플리케이션에서 고지	'23. 1. 기준
주행	잠금해제 이후 반납까지 1분당 과금되는 요금	100원		
10회권	월 10회 10분 무료	15,000원		
20회권	월 20회 10분 무료	28,000원		
30회권	월 30회 10분 무료	36,000원		
1시간권	1시간 이용권	4,900원		
2시간권	2시간 이용권	8,000원		
잠금해제 (야간패스 이용자)	야간패스 구매자 한정, 21시~05시 이용요금의 50% 할인	500원 (심야 0~4시 750원)		
주행 (야간패스 이용자)	야간패스 구매자 한정, 21시~05시 이용요금의 50% 할인	50원		

가맹점사업자가 상기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연동하여 일체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킥고잉 가맹사업의 특성상 상기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기권과 야간할인패스와 같은 할인 상품의 경우, 전체 가격 대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운행을 한 비율에 따라 요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가맹사업	키크고잉	-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키크고잉	-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설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동'을 기준으로 정하되, 상호 동의 하에 기준을 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가맹계약서 별지에 명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행정구역당 1점포	가맹계약서 별지에 명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① 당사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당사는 업종 및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정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기기의 배치 등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점포의 수익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귀하의 책임임을 확약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지도로 표시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가집니다.
- ④ 당사는 전항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⑤ 해당 영업지역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상권 (이하 '특수상권')은 분리합니다. 귀하의 점포가 특수상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상권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으로 합니다.
- ⑥ 영업지역을 벗어난 기기의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해당기기를 가능한 빨리 본인 영업지역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⑦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영업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의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 희망 점포가 승인 당시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합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현저한 매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최종적인 결정 및 책임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단위면적당 운영 대수 기준(직경 100m당 자전거 3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를 얻는 방법
·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재조정 사유 검토 →영업지역 변경(안) 제안 →가맹점사업자 합의 →계약서 추가합의서 서명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 후 30일 이내에 합의 여부 회신, 15일 이내에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해당 기기를 빠르게 본인의 영업지역으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밖에서 본인 소유 기기의 대여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사 혹은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의 50%를 지급합니다.

구 분	해당 기기를 소유한 가맹사업자	가맹본부 혹은 대여가 발생한 영업지역의 가맹사업자
영업지역 외 대여 수익 배분	50%	50%

위와 같은 수익 배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혹은 해당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혹은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지 여부

당사는 킥고잉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혹은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단, 상기 4)항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다른 가맹점사업자 소유 기기 대여가 발생한 경우 대여 수익 배분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절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하여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유통업체명	주 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주)올룰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킱고잉'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취급품목에 차이가 있음

4.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당사의 서비스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불문하고 모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 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기준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가맹점	자사 온라인
2022	-	-	-	10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 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2	0%	100%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킱고잉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서비스 기간 (2년)이 종료하는 날까지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계약 연장, 재계약 또는 종료와 관련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D)
① 귀하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Y→㉔, N→㉕)	D-180 ~ D-90
㉔ 3)에서 정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까? (Y→㉖, N→㉗)	D-180 ~ D-90
㉕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Y→㉘, N→A)	D-180 ~ D-90
㉖ 가맹본부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Y→B, N→A)	㉔+15일 이내
㉗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을 동의하였습니까? (Y→C, N→㉙)	
㉘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입니까? (Y→B, N→D)	
㉙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Y→B, N→㉚)	D-180 ~ D-90
㉚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Y→E, N→A)	D-60일 이내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상호 합의 하, 계약조건 변경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상호 합의 하,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3) 계약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제1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제1항 제2호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 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제1항 제3호
▪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제1항 제4호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제1항 제5호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제1항 제6호

▪ 킥고잉 브랜드에 심각한 악영향을 대외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제47조 제1항 제7호
▪ 자전거 운영대수가 영업지역에 필요한 최소 기준 (직경 100m당 3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영업지역을 축소하거나 자전거를 추가로 구매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7조 제1항 제8호
▪ 계약기간 중 본 계약상 파트너의 책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가맹본부로부터 3회 이상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제47조 제1항 제9호

4)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사유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의해지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계약해지에 합의할 경우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중도해지의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유효합니다.

② 일반해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당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정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물품 등의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30조 제1항 제1호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제30조 제1항 제3호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0조 제1항 제4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제30조 제1항 제5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0조 제1항 제6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0조 제1항 제7호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30조 제1항 제8호

③ 즉시해지

다음의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가맹계약서 제48조 제2항 각호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서면통지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 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한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명백하게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동의없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불가피하게, 혹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일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동의 필요 여부
·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률 (가맹사업법 포함)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X
· 관계기관의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X
· 중요한 영업 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O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동의를 필요할 경우)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계약서 서명 (동의를 불필요할 경우, 서면 통지 후 1개월내 서명 완료)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거래에 동의해야 합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부서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 동의 여부 통지 (양도 신청 후 3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당사 간 양수도계약 체결 (통지 후 5일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비 고	문의: 물류혁신팀 (1800-7492)

양도 절차가 종료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희망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가맹점운영권을 제3자로 하여금 대리행사 하도록 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은 본 가맹점운영권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구 분	조 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부서 검토 (상속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상속 신청 후 10일 소요) → 상속인, 당사 간 가맹계약 체결 (통지 후 5일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위탁	당사 승인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 행사 또는 위탁 신청 → 당사 담당부서 검토 (대리행사 또는 위탁 계약서 검토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신청 후 10일 소요)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킥고잉과 유사한 업종의 다른 브랜드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경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업 금지 업종	경업 금지 지역	경업 허가 절차	비 고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자전거, 모패드, 스쿠터 등 이륜이동장치의 대여 혹은 운영 관련 사업	국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 허가 신청 → 당사 담당자 검토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문의: 물류혁신팀 (1800-749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Kickgoing 서비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와 관련한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24시간	영업일수	연중무휴	문의	물류혁신팀 (1800-7492)
------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수 및 근무 형태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당사의 영업장 관리, 감독

당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을 방문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관리 감독 내용	시 기	담당팀
영업장 안전 관리	- 배터리 충전 장치 노후화 여부 - 배터리 보관 설비 안전성 - 화재 대비 장비 구비 여부	분기	물류혁신팀
고장 기기 관리	- 고장 기기 혹은 고장 징후 기기의 정비 내역 - 영업지역 내 운영 중인 기기의 정비 상태	수시	물류혁신팀
배터리 교체 상태	교체대상 배터리의 교체 작업 수행 실적	수시	물류혁신팀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전국 단위의 브랜드 광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브랜드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상품 광고 혹은 온라인 판촉 등은 수혜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광고 및 판촉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각종 패스 및 쿠폰과 같이 사전에 가맹계약서에 따라 정산 방법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비용 부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분	내 역	비용 부담		관련 절차	비 고
		당사	가맹점		
광고	상품 광고	50%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 (정산시 제공)	광고 집행 기간 (월 기준) 동안 발생한 매출 비중으로 가맹점 간 안분
	가맹점 모집 광고	100%	0%		
	가맹점 개별 광고	0%	100%	가맹점 개별 광고(안)에 대하여 당사 승인 후 집행	
판촉	온라인 판촉 (특정기간 가격할인 프로모션)	50%	50%	판촉 계획을 가맹점에 사전에 공지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가맹점 70% 이상 동의시 전체 적용. 가맹점 부담 비용은 각 가맹점별 이용실적에 따라 정산

	오프라인 판촉	50%	50%	기념품, 팸플릿,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해당 가맹점 혹은 직영점에 투입되는 실비 기준 부담 (각 가맹점은 행사 참여 여부를 각자 결정할 수 있음)	
--	------------	-----	-----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해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됩니다. 당사의 허락없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를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이후에 가맹계약서 제51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위반행위 1건당 오천만원 (₩50,000,000)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계약서 제49조[계약의 종료와 조치] 제1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상호, 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반일로부터 1일당 오십만원 (₩500,000)을 당사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 제5조 제9호(분쟁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제7조 제1호(가맹점사업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비스 등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또는 제18조 제1항 제2호(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및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사업 문의 접수	- 가맹 문의 접수 - 희망 영업지역 확인 및 담당자 배정	D-45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대면 상담	D-40	
상권 분석	희망 영업지역 시장 분석	필요 시	
최종 협의	영업지역 및 자전거 구매 수량 확정	D-25	
가맹계약 체결	계약서 날인 (가맹점사업자, 가맹본사)	D-24	
가맹금, 계약금 납입	- 가맹금 (교육비) 예치 - 자전거 및 필수 부속품 구매 계약금 납입	D-19	9페이지 참조
점포 설계 확정	가맹점사업자가 희망하는 점포의 운영 적정성 및 Layout 협의	D-20	실비
인테리어 공사 완료	-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 - 충전 설비 배치	D-10	실비
교육 완료	- 운영 교육 (개시 전 교육) 3일 소요	D-5	
잔금 납입	자전거 및 필수 부속품 잔금 납입	D-3	9페이지 참조
서비스 개시	가맹점 개설 및 서비스 개시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 들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 환경개선 시 비용 지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장비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노후 장비에 대한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간판 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비용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민원처리	고객센터 운영	없음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금액 전액 당사 부담	
업무지원	직영 인원 파견 및 업무관리 보조	지원 요청 시	요청기간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전액 가맹점사업자 부담	

3.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 혹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물류, 정비, 판매 촉진, 회계, 안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가맹점의 수익, 운영 지표 등을 토대로 당사가 해당 가맹점에 대한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경영지도 사유와 계획을 제시 후, 30일 이내에 방문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제시,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물류혁신팀 (1800-7492)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가 경영지도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방문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제시,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물류혁신팀 (1800-7492)

4. 신용 제공 등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당사는 위 1항 내지 3항 이외에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경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 교육훈련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노하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교육 방식	필수 여부	최소 시간	비용
개시 전 교육	·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사용 법 · 배터리 교체 및 자전거 회수·배포 방법 · 자전거 정비 매뉴얼 · 가맹본사 운영 정책	실습	필수	3일	1백만원 (최대 2인)
개시 후 교육	· 상동	실습	가맹점 요청 시	3일	1백만원 (1인당)
정비 교육	· 자전거 정비 매뉴얼 · Advanced 정비	실습	가맹점 요청 시	필요 시간	실비
보수 교육	· 가맹본사 운영 정책 변경 · 가맹점 영업 활성화 ·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변경	실습 강의	필요 시	필요 시간	실비

2. 교육훈련 관련 참고사항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직접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기 어렵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이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인원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개점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으며 가맹계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VIII.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 번	지 역	명 칭	소 재 지
1.	경기도 광주	주식회사 올룰로	경기도

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4년 4개월

3.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13,291백만원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매출액은 당사의 2022년도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